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5

발의연월일: 2024. 6. 7.

발 의 자:임이자·김태호·김형동

김위상 • 곽규택 • 김성원

김종양 · 김승수 · 최수진

권영세 의원(10명)

제안이유

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은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고,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, 지연이자 등 여러 제재수단을 통해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약 1조 7천억 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약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등 임금체불은 심각한 상황임.

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 자를 부과하고, 고의·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 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정부지원 등 제한, 공공입찰 시 불이익 부여, 신용제재 확대·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.

또한,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

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 자까지 확대함(안 제37조).
- 나.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체불하는 사업주(이하 "상습체불사업주"라함)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의3).
- 다.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을 위하여 해당 상습 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국가등이 요구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3조의4 신설).
- 라. 상습체불사업주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3조의5 신설).
- 마.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43조의6 신 설).
- 바. 근로감독을 위한 사업장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10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만 해당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 날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만 해당된다):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
- 2.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: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
-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
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"수당, 그 밖의 모든 금품"을 "수당,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, 그 밖의 모든 금품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공개 여부를"을 "공개 여부 및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"로, "이하 이 조에서"를 "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서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"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사업주"로 하고, 같은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 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
 - 2.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

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4(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) ① 고용노동 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(법인인 경우 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. 이하 "상습체불사업주"라 한다)의 임금 등 체불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- 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·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
- 2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 전심사나 낙찰자 심사·결정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
- ② 상습체불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.
- 1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임금등(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퇴 직급여등은 제외한다)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
- 2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 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,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
- ③ 제2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⑤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 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, 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,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임금 등 체불횟수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3조의5(업무위탁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 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중 일부를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(이하 "근로복지공단"이라 한다)이나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・법인・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43조의6(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,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,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국가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관계 전산망의 이용(이하 "자료제공등"이라 한다)을 해당 각 호의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

- 1.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
- 2.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,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,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법인세법」 제11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
- 3.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
- 4.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, 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,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임금,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2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

- 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.
- 1.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
- 2. 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 고자료
- 3.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
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 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등의 체불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 개 정 아 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제37조(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)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이자) ① -----다음 각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 2조제5호에 따른 급여(일시금 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만 해당된다)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하는 날의 다음 날----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 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 의 범위에서 「은행법」에 따 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. 1.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<신 설> 하는 임금 및 「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」 제2조제5호에 따 른 급여(일시금만 해당된다):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4일이 되는 날 <신 설> 2.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

② (생략)

제43조의2(체불사업주 명단 공개) | 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6조, 제43조, 제51조의3, 제52조제2 항제2호, 제56조에 따른 임금, 보상금, 수당, 그 밖의 모든 금 풀(이하 "임금등"이라 한다)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(법인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한다. 이하 "체불사업주"라 한 다)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 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 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. 다만, 체불사업주의 사망 · 폐업으로

하는 임금: 제43조제2항에 따
라 정하는 날
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
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
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
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
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
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]43조의2(체불사업주 명단 공개)
①
人口
<u>수당,</u>
<u>수당,</u>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 12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,

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
- ② (생 략)
- ③ 제1항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<u>공개 여부</u> 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(<u>이하 이 조에서</u> "위원회"라 한 다)를 둔다.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④ (생 략)

제43조의3(임금등 체불자료의 제 저 공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「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

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3</u> _
개 여부 및 제43조의4에 따른
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사항을
<u>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4에</u>
서
④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
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
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
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
<u>으로 본다.</u>
⑤ (현행과 같음)
세43조의3(임금등 체불자료의 제
공) ①

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 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임 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3 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 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에 관한 자료(이하 "임금등 체불자료"라 한다)를 요구할 때에는 임금등 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체불사업주의 사망 · 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 설>

_														_	_
_						- <u>ㄷ</u>	누음	-	각	.]	호.	의	0	ļ	=
<u></u>	<u>ֆ</u> լ	70	케	해	당	하	는	- /	체	불	사	.업	주	. — -	_
_														-	_
-														_	_
_														_	_
-														_	_
-														_	_
_														_	_
_															

1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 이 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 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

②·③ (생략) <신 설>

- 2.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 사업주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43조의4(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제한 등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 자를 포함한다. 이하 "상습체불사업주"라 한다)의 임금등 체물자료를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(이하 "국가등"이라 한다)이 요구할 때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- 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·지원사업의 참여 배제나 수급 제한
- 2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낙 <u>찰자 심사·결정 시 감점 등</u> 불이익 조치

- ② 상습체불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.
- 1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근로자에게 임금등(「근로 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12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한다)을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한 사업주
- 2.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 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고, 체불총액이 3 천만원 이상인 사업주
- ③ 제2항에 따라 상습체불사업 주를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 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 다.
- ④ 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

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 공받은 자료를 제1항 각 호에 서 정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5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 자료의 제공 절차 및 방법은 제43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.
- ⑥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기간, 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, 같은 항제2호에 따른 임금 등 체불횟수의 산정 및 제3항에 따른 소명 기회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3조의5(업무위탁 등)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 무 중 일부를 「산업재해보상 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 복지공단(이하 "근로복지공단" 이라 한다)이나 전문성을 갖춘

<u>연구기관·법인·단체에 위탁</u>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 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 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.

제43조의6(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 청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 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,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,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국가등의 보조 및 지원 제한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 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 (이하 "자료제공등"이라 한다) 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.

- 1.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 주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
- 2.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의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

자료,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1 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,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, 「법인세법」 제111조 및 「소득세법」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3. 국세청장에게 체불근로자의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

4.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의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산보험의 보험료장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3에 따른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, 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,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,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

자료

한 자료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 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 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 공받기 위하여 임금, 근로제공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제102조의2(자료 제공의 요청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 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기관・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수 있다.
 - 1. 「소득세법」 제4조제1항제1

 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
 - 2. 「고용보험법」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
 - 3.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 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또는 자료
 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

<u>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</u>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 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 료 등을 면제한다.